



Gimpo-City Council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제 266회】

# 임시회 회의 결과

■ 회 기 : 2026. 3. 16. ~ 2026. 3. 25. (10일간)

■ 구성 및 처리안건

▶ 행정복지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 한종우, 부위원장 : 정영혜
- 처리안건 : 조례안 및 일반·기타안건 3건

▶ 도시환경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 유매희, 부위원장 : 유영숙
- 처리안건 : 조례안 및 일반·기타안건 9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 유영숙, 부위원장 : 이희성
- 처리안건 :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김포시의회

#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목록(총괄)

번호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1	3742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진흥과	수정가결
2	375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법무과	수정가결
3	375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원안가결
4	3752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과	수정가결
5	3753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행정과	원안가결
6	3754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	찬성의견
7	3755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과	찬성의견
8	3756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과	찬성의견
9	3757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운양동 1246-1 에코센터)	공원과	부 결
10	3758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	원안가결
11	3759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종우 의원 유영숙 의원	원안가결
12	3760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종우 의원 유영숙 의원	원안가결
13	3761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성 의원	원안가결



**Gimpo-City Council**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

**김 포 시 의 회**

# 위원회 및 안건별 심사 결과

번호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1	375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원안가결
2	3752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과	수정가결
3	3753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행정과	원안가결
4	3758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의원	원안가결
5	3759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종우의원 유영숙의원	원안가결
6	3760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종우의원 유영숙의원	원안가결
7	3761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성의원	원안가결
8	3754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	찬성의견
9	3755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과	찬성의견
10	3756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과	찬성의견
11	3757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운양동 1246-1 에코센터)	공 원 과	부 결
12	3742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진흥과	수정가결

의안 번호	제3751호
----------	--------

##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김포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경감률 설정(안 제8조)
- 현행: 재산세 50% 경감
  - 개정: 재산세 최초 5년간 50% 경감, 그 다음 3년간은 25% 경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및 사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료의 반환 기준 확대 등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일부 축소(안 제12조)
- 나. 공설장사시설의 최초사용 및 연장기간 단축(안 제13조)
- 사용기간 단축에 따른 사용료 감액
- 다. 사용료 반환 범위 확대(안 제18조)
- 연장신고 시에도 사용료 반환 실시
- 라. 사용료에 대한 관외 사용자 기준 명확화(안 별표2)
- 마.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정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의 요지 : 개정안 제1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은 기존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봉안시설 부족 문제는 시설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김포시 인구가 73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봉안시설 부족 문제는 사용기간 단축이 아닌 시설 확충으로 해결해야 하며, 향후 한강2콤팩트시티 등 도시 계획 시 장사시설을 계획해 만장 문제를 대비할 것을 주문함.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수정안 1부

#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752호
----------	--------

제출년월일 2026. 3. 17.  
제출자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1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은 기존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봉안시설 부족 문제는 시설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현행 유지(안 제13조 제1항 제2호)
- 별표 2 중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 10년 기준 사용료를 삭제하고, 15년 기준으로 정비(안 별표 2 제2호)
- 사용기간 변경을 전제로 한 경과조치 규정 삭제(안 부칙 제2조)

#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10년으로”를 “15년으로”로, “10년씩”을 “15년씩”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14조 관련)

### 1. 공설묘지 등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관내	관외
공설묘지	단장	650,000	975,000
	합장	975,000	1,462,500
공동묘지	단장	50,000	75,000
	합장	75,000	112,500

### 2.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료	
무지개 뜨는 언덕	개인단	관내	500,000	
		관외	1,000,000	
	부부단	관내	900,000	
		관외	1,800,000	
김포시 추모공원	봉안담	개인단	관내	350,000
			관외	700,000
	부부단	관내	600,000	
		관외	1,200,000	
	유택동산		관내	10,000
			관외	50,000
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		관내	650,000	
		관외	1,300,000	

### 3. 자연장지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료
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	개인단	관내	800,000
		관외	1,600,000
	부부단	관내	1,500,000
		관외	3,000,000

비고

1. “관외”란 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 또는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의 매장 또는 봉안 시 비석대, 표식대 등 수반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제13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 내 분묘,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u>10년</u>으로 하며, 1회 <u>10년</u>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3.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13조(사용기간 등) ① ----- ----- -----.</p> <p>1. (제출안과 같음)</p> <p>2. ----- <u>15년</u>으로 ----- <u>15년</u>씩 ----- --.</p> <p>3. (제출안과 같음)</p> <p>② ~ ⑤ (제출안과 같음)</p>																																																																																																												
<p>[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14조 관련)</p> <p>1. (생 략)</p> <p>2.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사용료</th> </tr> <tr> <th>사용기간 15년</th> <th>사용기간 10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무지개 뜨는 언덕</td> <td rowspan="2">개인단</td> <td>관내</td> <td style="color: red;">500,000</td> <td style="color: red;">330,000</td> </tr> <tr> <td>관외</td> <td style="color: red;">1,000,000</td> <td style="color: red;">660,000</td> </tr> <tr> <td rowspan="2">부부단</td> <td>관내</td> <td style="color: red;">900,000</td> <td style="color: red;">600,000</td> </tr> <tr> <td>관외</td> <td style="color: red;">1,800,000</td> <td style="color: red;">1,200,000</td> </tr> <tr> <td rowspan="6">김포시 추모 공원</td> <td rowspan="4">봉안 담</td> <td rowspan="2">개인단</td> <td>관내</td> <td>350,000</td> <td>230,000</td> </tr> <tr> <td>관외</td> <td>700,000</td> <td>460,000</td> </tr> <tr> <td rowspan="2">부부단</td> <td>관내</td> <td>600,000</td> <td>400,000</td> </tr> <tr> <td>관외</td> <td>1,200,000</td> <td>800,000</td> </tr> <tr> <td colspan="2" rowspan="2">유택동산</td> <td>관내</td> <td colspan="2">10,000</td> </tr> <tr> <td>관외</td> <td colspan="2">50,000</td> </tr> <tr> <td colspan="2" rowspan="2">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td> <td>관내</td> <td colspan="2">650,000</td> </tr> <tr> <td>관외</td> <td colspan="2">1,300,000</td> </tr> </tbody> </table> <p>3. (생 략)</p> <p>비고</p> <p>1. (생 략)</p> <p>2. (생 략)</p>	구 분			사용료		사용기간 15년	사용기간 10년	무지개 뜨는 언덕	개인단	관내	500,000	330,000	관외	1,000,000	660,000	부부단	관내	900,000	600,000	관외	1,800,000	1,200,000	김포시 추모 공원	봉안 담	개인단	관내	350,000	230,000	관외	700,000	460,000	부부단	관내	600,000	400,000	관외	1,200,000	800,000	유택동산		관내	10,000		관외	50,000		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		관내	650,000		관외	1,300,000		<p>[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14조 관련)</p> <p>1. (제출안과 같음)</p> <p>2.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사용료</th> </tr> <tr> <th colspan="2"></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무지개 뜨는 언덕</td> <td rowspan="2">개인단</td> <td>관내</td> <td colspan="2" style="color: blue;">500,000</td> </tr> <tr> <td>관외</td> <td colspan="2" style="color: blue;">1,000,000</td> </tr> <tr> <td rowspan="2">부부단</td> <td>관내</td> <td colspan="2" style="color: blue;">900,000</td> </tr> <tr> <td>관외</td> <td colspan="2" style="color: blue;">1,800,000</td> </tr> <tr> <td rowspan="6">김포시 추모 공원</td> <td rowspan="4">봉안 담</td> <td rowspan="2">개인단</td> <td>관내</td> <td>350,000</td> <td>230,000</td> </tr> <tr> <td>관외</td> <td>700,000</td> <td>460,000</td> </tr> <tr> <td rowspan="2">부부단</td> <td>관내</td> <td>600,000</td> <td>400,000</td> </tr> <tr> <td>관외</td> <td>1,200,000</td> <td>800,000</td> </tr> <tr> <td colspan="2" rowspan="2">유택동산</td> <td>관내</td> <td colspan="2">10,000</td> </tr> <tr> <td>관외</td> <td colspan="2">50,000</td> </tr> <tr> <td colspan="2" rowspan="2">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td> <td>관내</td> <td colspan="2">650,000</td> </tr> <tr> <td>관외</td> <td colspan="2">1,300,000</td> </tr> </tbody> </table> <p>3. (제출안과 같음)</p> <p>비고</p> <p>1. (제출안과 같음)</p> <p>2. (제출안과 같음)</p>	구 분			사용료				무지개 뜨는 언덕	개인단	관내	500,000		관외	1,000,000		부부단	관내	900,000		관외	1,800,000		김포시 추모 공원	봉안 담	개인단	관내	350,000	230,000	관외	700,000	460,000	부부단	관내	600,000	400,000	관외	1,200,000	800,000	유택동산		관내	10,000		관외	50,000		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		관내	650,000		관외	1,300,000	
구 분				사용료																																																																																																									
			사용기간 15년	사용기간 10년																																																																																																									
무지개 뜨는 언덕	개인단	관내	500,000	330,000																																																																																																									
		관외	1,000,000	660,000																																																																																																									
	부부단	관내	900,000	600,000																																																																																																									
		관외	1,800,000	1,200,000																																																																																																									
김포시 추모 공원	봉안 담	개인단	관내	350,000	230,000																																																																																																								
			관외	700,000	460,000																																																																																																								
		부부단	관내	600,000	400,000																																																																																																								
			관외	1,200,000	800,000																																																																																																								
	유택동산		관내	10,000																																																																																																									
			관외	50,000																																																																																																									
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		관내	650,000																																																																																																										
		관외	1,300,000																																																																																																										
구 분			사용료																																																																																																										
무지개 뜨는 언덕	개인단	관내	500,000																																																																																																										
		관외	1,000,000																																																																																																										
	부부단	관내	900,000																																																																																																										
		관외	1,800,000																																																																																																										
김포시 추모 공원	봉안 담	개인단	관내	350,000	230,000																																																																																																								
			관외	700,000	460,000																																																																																																								
		부부단	관내	600,000	400,000																																																																																																								
			관외	1,200,000	800,000																																																																																																								
	유택동산		관내	10,000																																																																																																									
			관외	50,000																																																																																																									
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		관내	650,000																																																																																																										
		관외	1,30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사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봉안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용기간  
및 연장 횟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1  
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출안과 같음)

<삭제>

의안 번호	제3753호
----------	--------

##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한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2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의안 번호	제3758호
----------	--------

##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유영숙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가 주간 중심에서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 경관 관리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야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관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야간경관의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2)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야간경관의 증진) ① 시장은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경관계획은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야간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야간경관 관리의 분야·권역별 및 지역·가로별 구축·개선
3. 그 밖에 야간경관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7조의2 (야간경관의 증진) ①</u>  <u>시장은 야간경관을 종합적·체</u>  <u>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u>  <u>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또는</u>  <u>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u>  <u>경우 야간경관계획은 경관계획</u>  <u>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u></p> <p><u>② 야간경관계획에는 다음 각</u>  <u>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u>  <u>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u> <u>및 추진 방향</u></li> <li><u>2. 야간경관 관리의 분야·권역</u> <u>별 및 지역·가로별 구축·개</u> <u>선</u></li> <li><u>3. 그 밖에 야간경관 향상 및</u> <u>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li> </ol>

의안 번호	제3759호
----------	--------

##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한종우 의원, 유영숙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차위반 및 무단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견인료는 실제 견인·보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견인료 현실화를 통해 행정비용 회수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질서 확립 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견인 비용 조정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 요금 변경 (별표)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승용자동차	35,000원	1,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1,4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60,000원	2,5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30,000원	없음

### 2. 보관요금

○ 「김포시 주차장 조례」 제5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1급지)에 준하여 부과하고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

### 3. 공고비용 : 해당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해 공고에 든 비용

(별지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 역		원		원		내 역		원		원		내 역		원		원		내 역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김 포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b>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b></p> <p>1. 견인요금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구분 대상차량</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견 인 료</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요금 (편도 5km까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추가요금 (매km증가시)</th> </tr> </thead> <tbody> <tr> <td>승용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r> <td>승합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원</td> </tr> <tr> <td>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원</td> </tr> <tr> <td>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r> </tbody> </table> <p>2. (생   략)</p> <p>3. (생   략)</p> <p>(별지서식) (생   략)</p>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승용자동차	35,000원	1,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1,4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60,000원	2,5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15,000원	없음	<p>[별표]</p> <p><b>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b></p> <p>1. 견인요금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구분 대상차량</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견 인 료</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요금 (편도 5km까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추가요금 (매km증가시)</th> </tr> </thead> <tbody> <tr> <td>승용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r> <td>승합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원</td> </tr> <tr> <td>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원</td> </tr> <tr> <td>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r> </tbody> </table>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별지서식) (현행과 같음)</p>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승용자동차	35,000원	1,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1,4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60,000원	2,5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30,000원	없음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승용자동차	35,000원	1,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1,4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60,000원	2,5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15,000원	없음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승용자동차	35,000원	1,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1,4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60,000원	2,5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30,000원	없음																																	

의안 번호	제3760호
----------	--------

##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한종우 의원, 유영숙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산으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은 향상되었으나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장구 미착용 등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보행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자의 이용 안전 증진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안 제11조)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이용자의 면허 등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3. 대여 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4. 불법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u> <u>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u> <u>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u> <u>력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u> <u>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u></li> <li><u>2. 이용자의 면허 등 이용자격</u> <u>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u> <u>여</u></li> <li><u>3. 대여 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u> <u>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u> <u>자 준수사항 안내</u></li> <li><u>4. 불법주차(방치) 개인형 이동</u> <u>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u> <u>치</u></li> <li><u>5.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u> <u>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u></li> <li><u>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u> <u>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의안 번호	제3761호
----------	--------

##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이희성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으로 천막 재질에 비해 안전성이 제고되었으나, 현재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속 건축물, 보관시설 등에는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음.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나, 고온다습 및 습기에 취약한 구조적 환경 속 자연발화·화학적·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되어 현행 조례에 명시된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강판 재질로 구조를 개선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포함(안 제20조제2항제11호)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장”을 “공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략)</p>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 ~ 10. (생략)</p> <p>11. <u>공장</u>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서 사용하는 부 속창고 용도로서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가. ~ 다. (생략)</p> <p>12. ~ 15. (생략)</p> <p>③ (생략)</p>	<p>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공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u>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12. ~ 1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의안 번호	제3754호
----------	--------

##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우리 시는 2023년 대도시로 진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출안건 참조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찬성의견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의안 번호	제3755호
----------	--------

##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30년 김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출안건 참조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찬성의견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의안 번호	제3756호
----------	--------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의 도로관리사업소(영업소)를 서김포 나들목(ic), 하성나들목(ic) 교통광장에 설치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해제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입안하고자 함.

\*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영업소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해제시 영업소 설치가 가능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공사
- 위치 : 기점)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종점)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사업규모 : L=25.42km, B=23.4m
- 사업시행자 : (주)한국도로공사
- 사업기간 : 2019. 2. ~ 2027. 12. (現 공정률 67%)

#### 나. 주요내용

- 1)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3,300㎡)
- 2) 도시계획시설 변경
  - 가) 도로→교통광장(서김포영업소 1,650㎡)
  - 나) 교통광장 분리(하성영업소 1,65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찬성의견**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의안 번호	제3757호
----------	--------

##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운양동 1246-1 에코센터)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06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17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18일

### 2. 제안이유

-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공유재산인 에코센터를 사용허가하여 생태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공서비스를 민관과 협력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 세수를 확충하고자 함.
-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1천만원 이상)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 가. 재산현황

재 산 이 름	에코센터
준 공 일 시	2011년 11월 17일
위        치	김포시 운양동 1246-1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에코센터
주 요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면적(건폐율)	1,959.62㎡(19.60%)
연 면 적(용적율)	3,633.67㎡(20.54%)
주 요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지하1층 / 지상3층, 높이 25.4m)

주 차 장	59대(지하:28/지상:31)
층 별 면 적 (3,633.67㎡)	지하1층(1,550.56㎡)
	1층(1,895.24㎡)
	2층(126.66㎡)
	3층(61.21㎡)

나. 사용허가 추진개요

- 허가목적 : 생태 체험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필요할 시 1회(5년)의 범위 내 연장
- 허가대상 : 건축물 1,817㎡, 토지 4,999㎡
- 사 용 료 : 129,048천원(연 예정가격)
- 허가조건 : 내부 리모델링 및 시설 사용자 직접 공사 · 설치 및 운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공유재산인 에코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 운영방식 재검토, 임대기간 기준 명확화, 사전설명 강화 등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의안 번호	제3742호
----------	--------

##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20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28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3월 25일

### 2. 제안이유

-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임대사업 정책에 대한 운영 규정 및 체계를 확립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고정식 농기계”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
- 나. 임차인 범위를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로 확대(안 제7조의2)
- 다. 임대기간 연장 완화 및 농기계의 중·장기 임대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라.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 마. 고정식 농기계 사용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의2)
- 바. 그 밖에 용어 등 정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개정안 제9조제2항은 관리요원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기준 및 횟수가 명확하지 않아 공유재산의 사유화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수정안 1부

#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742호
----------	--------

제출년월일 2026. .  
제출자 도시환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9조제2항은 관리요원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기준 및 횟수가 명확하지 않아 공유재산의 사유화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임대기간 연장 완화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유화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으로 유지하도록 수정함(안 제9조제2항)

#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관리요원과 협의 후 임대기간을”을 “1회에 한하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제9조(임대기준과 시간) ① (생략)</p> <p>②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u>관리요원과 협의 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③ ~ ⑤ (생략)</p>	<p>제9조(임대기준과 시간) ① (제출안과 같음)</p> <p>② ----- ----- ----- ----- ----- ----- <u>1회에 한하여</u> -----.</p> <p>③ ~ ⑤ (제출안과 같음)</p>



Gimpo city council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제 26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 심사결과보고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03월 06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03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2026년 03월 23일
- 라. 의 결 일 자 : 2026년 03월 23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재원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법정 경비,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세출예산으로 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함.

## 3. 주요내용

###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총 계	1,876,161,625	1,773,480,802	102,680,823
일 반 회 계	1,567,991,288	1,495,876,718	72,114,570
특 별 회 계	308,170,337	277,604,084	30,566,253
공기업특별회계	236,451,587	229,086,253	7,365,334
기타특별회계	71,718,750	48,517,831	23,200,919

## 3. 검토보고 : 생략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주문사항** : 별첨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Gimpo city council**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김 포 시 의 회**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 ■ 기능별 승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Ⅰ)	요구액(Ⅱ)	증감(Ⅰ - Ⅱ)	비고
총 계	1,876,161,625	1,876,161,625	0	
일 반 회 계	1,567,991,288	1,567,991,288	0	
일반공공행정	113,691,718	113,691,718		
공공시설및안전	9,929,558	9,929,558		
교 육	40,520,859	40,520,859		
문화및관광	75,224,873	75,224,873		
환 경	112,013,686	112,013,686		
사회복지	712,592,436	712,592,436		
보 건	44,551,505	44,551,505		
농림해양수산	52,900,892	52,900,89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185,653	23,185,653		
교통및물류	173,705,101	173,705,101		
국토및지역개발	41,850,734	42,320,834	△470,100	
예비비	6,170,100	5,700,000	470,100	사업비 삭감액 예비비 편성
기 타	161,654,173	161,654,173		
특 별 회 계	308,170,337	308,170,337		
공기업특별회계	236,451,587	236,451,587		
수도사업특별회계	91,610,753	91,610,75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4,840,834	144,840,834		
기타특별회계	71,718,750	71,718,7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48,673	5,048,67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6,555	146,555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9,067,055	9,067,055		
교통사업특별회계	9,384,100	9,384,1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5,794,592	45,794,592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802,230	802,230		
도시재생특별회계	1,475,545	1,475,545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부 기	예산안 요구액	수 정 안		비고
			감 액	예산액	
합 계	1개 부서, 1개 사업	470,100	470,100	0	
클린도시과	친환경 공공광고물 설치	470,100	470,100	0	